

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74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'99. 8. 23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 관련 사무를 처리함.
-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.
-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함.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

4. 첨 부

-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1부.
- 관계법령 1부.

조례 제 1 호

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처의 설치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
②사무처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처장) ①사무처에 사무처장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②처장은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,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 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82조 【사무처등의 설치】 ① 시·도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83조 【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】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
타 시·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 특이사항

□ 서울특별시

- 직원의 정원 명시 (제6조)
 - 정원 200명 (일반직 99, 별정직 22, 기능직 79)
- 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(제7조)
 -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경기도

- 사무분장 명시
 - 총무·의사담당관, 전문위원
- 총무·의사담당관, 전문위원 직급 명시
 - 총무·의사담당관 :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 - 전문위원 : 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
- 교섭단체의 직원 (제7조) ⇒ 교섭단체 입법활동 지원
 - 직원은 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
지방사무보조원 또는 지방조무원 1인
 -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
- 계장조항 명시 (제8조)
 -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

□ 부산광역시

- 직원의 지원요청 (제5조) 명시
 -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에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